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1479-1 제출연월일: 2020. 8. .

제 출 자: 복지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 제정 후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고,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
- (2)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되, 제3조의 제목을 <u>"적용범위</u>"로 하고,
- (3) 안 제6조제1항 중 "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"를 "「치매 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<u>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</u>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고,
- (4)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- 나. 종전의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(1) 종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제3항으로 한다.
- (2) 제6조제3항(종전의 안 제9조)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 "보조금과 관련하여"를 추가하여 "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"로 하고,
 다. 안 제10조 본문 중 "정할 수 있다"를 "정한다"로 수정하고,
 라. 안 부칙 중 "공포한 날"을 "2021년 1월 1일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제목을 "적용범위"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"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"를 "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종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3항으로 하고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 "보조금과 관련하여"를 추가하여 "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"로 한다.

안 제10조 본문 중 "정할 수 있다"를 "정한다"로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"공포한 날"을 "2021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u>제3조(</u>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) ① (생략)	<u>제4조</u> (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
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 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 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
<u>제4조(</u> 지원대상자 선정)① (생략) ② (생략)	<u>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)① (제정안과 같음)</u> ② (제정안과 같음)
<u>제5조(</u> 보조금 지원범위) ①구청장은 <u>제4조</u> 에 따른	<u>제6조(</u> 보조금 지원범위) ① 구청장은 <u>제3조</u> 에 따른
1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 2. (생략) ② (생략) <신설>	1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 <u>로 성동구</u>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. (제정안과 같음) 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<u>제6조(보조금</u> 신청 방법) (생략) <u>제7조(</u> 감독 등) (생략) <u>제8조(</u> 환수조치) (생략)	<u>제7조(보조금</u> 신청 방법) (제정안과 같음) <u>제8조(</u> 감독 등) (제정안과 같음) <u>제9조(</u> 환수조치) (제정안과 같음)
제9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삭제>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	<u>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③ 보조금과 관련</u> <u>하여</u>

<u>제10조</u>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할 수 있다</u> .	<u>제10조</u> (시행규칙) <u>정한다</u> .
부 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 부터 시행한다.	부 칙 <u>2021년 1월 1일</u>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 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스타이머 콕"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,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.
- 2. "사업자"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6조제2항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 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
- 제4조(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)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)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세대주 또는 세 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 -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보조금 지원범위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 - 2. 70세 이상 주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 -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7조(보조금 신청방법)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감독 등)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제9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 -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
- 4.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